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19년 1월 1일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189,400원	1,142,400원	980,8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 9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한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2. 방문목욕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 거

리 말리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을 지원한다.

②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③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600	1,294,700	1,240,900	1,142,400	980,8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6%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이하	9%